

시유재산(토지)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(변상금의 징수)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(변상금)에 의거 시유 재산(토지)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보관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2023. 3. 27.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23. 3. 27. ~ 2023. 4. 10.
2. 공고대상

대상자		점유 토지	부과금액	부과기간	반송 사유
성 명	주 소				
송*현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**길 *	중정로3가 7*-*	3,384,700원	2022.01.01 ~ 2022.12.31	보관기간 경과
유*록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**길 *	홍은동 8-***	203,420원		
한*섭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**길 *	홍은동 8-***	1,168,720원		
최*진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**길 *	홍은동 9-***	3,737,520원		

3. 공고내용 : 변상금 부과 고지
4. 법적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
5. 문의사항 :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공정관리팀(☎ 02-330-1985)